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4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순환자원 거래 매출액 제외(정연욱 의원안)	2

I. 개요

1.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04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연욱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21.
- (3) 회 부 일 : 2024.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 환경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여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순환자원 거래 매출액 제외 (정연욱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3제4항)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신 설>	☐ 순환자원 거래 매출액 제외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현행과 같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현행과 같음) ☐ 「 <u>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u> 」 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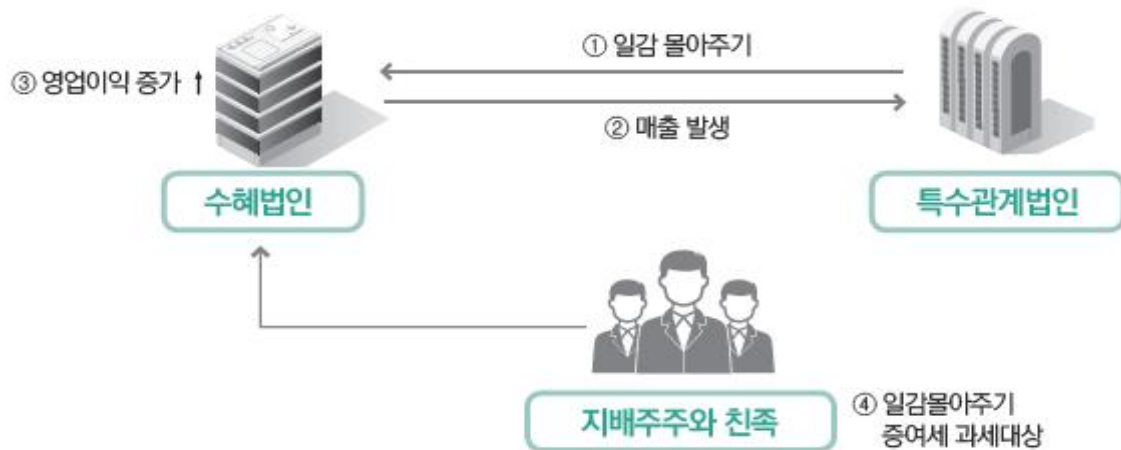
* 정연욱의원안 2024. 8. 21. 발의(의안번호 3048)

☐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하려는 것임.

☐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제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을 수혜법인에 출자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¹⁾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하여 결국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



동 제도는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전체 거래의 30%(중소 50%, 중견 40%)를 초과할 것, ③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전체주식의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등 3가지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의 규모,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수혜법인별 증여의제 이익 계산식]

수혜법인	증여의제이익
중소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대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과세요건과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고려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4항에서는 각각의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하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음²⁾.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식]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 4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 개정안은 과세제외매출액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3)에 따른 “순환자원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시켜 순환자원 생산·유통기업에 대하여 일감 몰아주기 과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임.

순환자원⁴⁾은 폐기물 중에서 환경 및 인체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고시⁵⁾한 것을 의미하는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⁶⁾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순환자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순환자원 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우대조치를 하는 등 순환자원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5) 현재(24년 1월)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된 물질·물건은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비철금속 중 구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7종임.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③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은 그와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순환자원 사용촉진 정책에 더하여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순환자원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탄소중립 달성 등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제도에 따른 증여세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특정 주주⁷⁾”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제혜택이 순환자원 업체의 원가 감소 등을 통한 순환자원 거래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순환자원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전체를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를 통한 편법 증여가 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둘째, “순환자원”이 정책적인 육성이나 장려가 필요한 다른 재화나 서비스보다 특별히 세제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과세제외매출액 대상이 순환자원 외의 재화 또는 서비스로 확대되는 경우 편법적인 증여를 규제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참고로, 현행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다

7)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

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등 10가지 유형이 있음8).

이는 증여세 과세가 적절하지 않은 ‘자기거래’ 혹은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와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간 거래’ 등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임.

문 의 처

02)6788-5161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5의2.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5의3. 수혜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